

국립법무병원 2026년 4분기 급식용 축산물 11종 구매 입찰 공고(긴급)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단가결정방법,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또는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60904-04호
- 입찰건명: 국립법무병원 2026년 4분기 급식용 축산물 11종 구매(긴급)
- 내역

품 목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계란 등 11종	내역서 참조	175,715	내역서, 특수조건, 납품기준 참조	2026. 10. 1. ~ 2026. 12. 31.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변동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제한경쟁, 지역제한**
- 계약방법: **단가계약**
- 기초금액: **175,715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입예정금액: 147,318,395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2. 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9. 10.(목) 14:30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5.(토) 09: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9. 9.(수)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0.(목) 12:00
- 개찰장소: 국립법무병원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g.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 특별법인인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업종코드4010)** 또는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업종코드 4041)**으로 신고 된 자로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계약 시 사본 제출)
-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예정통보 후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중소기업확인서,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

- ① 본 입찰은 **단가의 함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기준 낙찰 하한율 **86.245%**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④ 적격심사 결과는 5일 이내 통보하며,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 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선정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D]**) 적용
-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갖추어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의2호),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

○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 2% 이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천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천된 예비가격의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천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

5. 계약 및 단가결정

- **계약은 각 품목의 납품(계약)단가에 구입예정량을 곱한 구입예정금액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계약)단가는 내역서 상 각 품목의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곱하여 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 납품(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6. 납품

- **1주일에 3회 지정된 날 09:30~10: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국립법무병원 환자식당(2곳)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급식인원 변동 등 우리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국립법무병원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 ①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법무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같은 합니다.
-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유의사항

-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이행·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시 입찰공고서, 내역서,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 식품별 납품기준, 물품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중 식자재 관련 사항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영양사실(☎041-840-5518), 계약관련 사항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041-840-5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국립법무병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